

2026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기간제 근로자(미화) 공개경쟁 **긴급채용** 공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노원구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업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업무내용
미화	1명 (기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락산 동막골 자연 휴양림 외부 환경정비 등도로 및 데크 청소, 화장실 청소(주차장), 분리수거 등주 5일(월-일) 스케줄 근무(주말 필수 근무)7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포함)10:00-17:00

※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자격요건

분야	응시자격 기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고일 현재 노원구 관내 거주자 및 만 55세 이상이 된 자, 신체 건강한자로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6개월 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1개월 이내 제출)

나. 우대사항

분야	우대조건
공통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근로조건

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 070-4159-48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